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55호 서식] <신설 2019. 7. 9.>

산림복원지원센터 지정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기간 90일

신청인	기관·단체명	대표자 성명
	생년월일	법인등록번호
	주소 (전화번호:)	

전문 분야	1.
	2.
	3.

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2조의11,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9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림복원지원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산림청장 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	1. 사업계획서 1부(기관·단체 일반현황을 포함합니다) 2. 전문인력 및 장비 확보 현황 1부 3. 시설사용에 관한 계약서 사본 1부(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) 4. 산림복원관련 연구 및 사업 실적 1부(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)	수수료 없 음
담당공무원 확인사항	1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 2.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3. 사업자등록증명서 4.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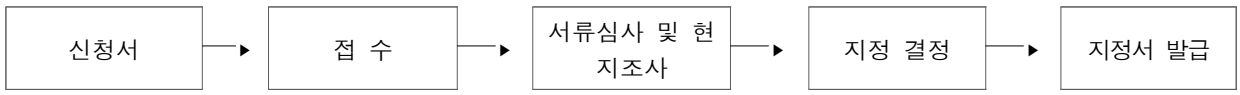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처리절차



신청인 산림청장

210㎜×297㎜(백상지 80g/㎡)